

第7次日韓學術討論會

要約發表文

兩國의 非居住者의 納稅義務

(副題) 日本/稅理士法人制度・韓國 /誠實申告確認制度

日 時 : 2011/ 11/ 22(火)

場 所 : 近畿稅理士會會館

목 차

I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공동의제)

(일본) -45 분-

- (1)비거주자의 정의 (발표자: 국제부원 타니구치 미츠오) /185
- (2)국내원천소득의 유형 (발표자: 국제부원 나카지마 히로시) /187
- (3)소득세 과세방법 (발표자: 국제부원 오구라 타케시) /189
- (4)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방법(발표자: 국제부원 이마즈 나오미) /191

(한국) -45 분-

- (1)비거주자의 정의 (발표자: 국제부원 김성훈) /195
- (2)국내원천소득 (발표자: 국제부원 김성훈) /195
- (3)국내사업장 (발표자: 국제부원 김성훈) /199
- (4)과세방법 (발표자: 국제부원 김은미) /201
- (5)양도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방법(발표자: 국제부원 김은미) /205

II 세리사법인제도(부제/일본) -30 분-

총괄발표자: 국제부 부부장 이케가미 히로미

내용발표자: 국제부원 나카지마 히로시

- (1)제도의 개요 /209
- (2)법인설립 /209
- (3)법인의 사원 /211
- (4)법인의 업무 /211
- (5)법인해산 /213
- (6)법인의 징계·벌칙 /215
- (7)수입현황 /217

III 성실신고확인제도(부제/한국) -30 분-

- (1)도입배경, 주요내용(1-4) (발표자: 국제부원 전미라) /219
- (2)주요내용(5), 문제점과 개선방향(발표자: 국제부원 한승훈) /225

I 공동의제: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일본)

1)비거주자의 정의

1.국내법상 정의와 취급

(1)비거주자의 정의

일본의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조)

(2)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란 「개인의 생활본거지」를 말하며 「생활본거지」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어떤 이의 체재지가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주소가 어딘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예를 들면 주거, 직업, 자산소재, 친족거주상황, 국적 등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3)거소의 정의

「거소」란 「그 사람의 생활본거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재일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에서 1년의 절반(183일)이상 체재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간 거주지를 여러 나라에 걸쳐 전전하여 이동하는 이른바 「영원한 여행객 (Perpetual Traveler, Permanent Traveler)」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생활본거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됩니다.

2.조세조약상 취급

조세조약에서는 우리나라와 규정이 다른 국가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판정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조세조약에 따르지만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적 장소」 「통상거주」 순서로 「국적」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한조세조약에서도 이와 같은 순서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원천소득의 유형

「국내원천소득」이란 국내에 사업이나 자산운용·보유 또는 양도소득 기타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 소득을 말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1 호부터 12 호까지입니다.

먼저 제 1 호의 「사업소득 등」의 범위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재고자산의 구입판매, 재고자산의 제조판매, 건설작업, 국제운수, 보험업, 출판·방송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운용·보유에 따른 소득으로서 국채 혹은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 거주자에 대한 대부금 등,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개인으로부터 받는 동산의 사용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에는 일본의 법령에 의한 면허나 권리 등,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한 유가증권 등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제 1 호의 2 의 「조합계약에 의한 분배금」은 국내에서 조합계약(민법 제 667 조 제 1 항)에 의거 받는 배분금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 1 호의 3 의 「토지, 건물 등의 양도대가」는 국내소재 토지나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 건물 및 그 부속설비 또는 구축물의 양도대가입니다.

제 2 호의 「인적용역제공 사업대가」로서는 영화·연극배우, 음악가, 예능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타 전문적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를 들 수 있습니다.

제 3 호의 「부동산 등의 임대대가」는 국내소재 부동산이나 부동산상 존재하는 권리의 임대, 채석권의 임대, 조광권 설정, 선박 혹은 항공기의 임대대가입니다.

제 4 호의 「채권·예저금 등의 이자」에는 일본국 국채 혹은 지방채,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금된 예저금의 이자와 합동운용신탁 등이 해당됩니다.

제 5 호의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이나 이익배당, 잉여금의 분배,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투자신탁이나 특정목적신탁의 수익분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 6 호의 「대부금이자」는 일본국내에서의 대부업의 대부금 혹은 대부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처가 국내업무에 관련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제 7 호의 「공업소유권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대가」는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과 관련된 권리, 특수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대가를 들 수 있습니다.

제 8 호의 「급여 등의 인적용역 제공대가」는 급여, 임금, 상여 기타 개인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중 국내에서의 근로제공, 기타 인적용역 제공에 기인하거나 공적연금 등, 퇴직수당 등 중에서 그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였던 기간에 제공한 근로 기타 인적용역 제공에 기인하는 것 등입니다.

제 9 호의 「광고선전용 상금」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광고선전용 상금으로 지급되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이 해당됩니다.

제 10 호의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은 국내소재 영업소 등과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기타 연금과 관련한 계약에 의하여 받는 연금으로서 공적연금 등 이외의 것이 해당됩니다.

제 11 호의 「정기적금의 급부보전금 등」은 정기예금·상호부금의 급부보전금, 저당증권에 관련된 이자, 금저축 등에 관련된 이익, 외화건예금의 차익 및 일시불 양로보험 등에 의한 차익 중 국내소재 영업소를 통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소득이 해당됩니다.

제 12 호의 「익명조합 등의 분배금」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출자금 중 익명조합 계약에 의하여 받는 이익분배가 해당됩니다.

3)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비거주자는 일본국내에서 얻은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과세됩니다(所法 5、所法 161)

이는 일본국내에서 얻은 소득(국내원천소득)은 일본에 거주하던 아니하던 원칙적으로 거의 같은 류의 소득으로서 일본에서 과세함으로써 과세관계가 평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방법은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1 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년도 3 월 15 일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비거주자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1 년간 소득을 합하여 다음 년도에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제도(所法 第 213 條)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제도하에서는 먼저 일단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의 누수가 적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국제세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제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4)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양도소득의 과세방법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산이 국내에 존재하는 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1)부동산관련 양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내소재 토지 혹은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 또는 건물 및 그 부속설비 혹은 구축물의 양도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됩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가는 10%를 원천징수한 후 과세되게 됩니다. 즉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의 10%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확정신고시 정산하게 됩니다.

단 양도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이 1 억 엔 이하고 당해 토지 등을 자기 또는 그 친족의 주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개인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주식 등의 양도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둔 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15%의 세율로서 신고분리과세 됩니다.

게다가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내국법인의 주권 등을 사들이고 이를 그 내국법인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거주자기간 중 근무 기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20% 원천징수 됩니다. 이 퇴직소득은 분리 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과세관계가 종료됩니다.

단 거주자가 퇴직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후의 수입감소나 노후생활 등으로 담세력이 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해 줌으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기간 중 근무에 대응하는 부분(국내원천소득)의 20% 상당액의 과세에 대신하여 퇴직을 사유로 연도 중에 지급 받은 퇴직수당 등의 총액을 거주자로 인정하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년수는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근속년수의 계산에는 비거주자 기간 중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I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비거주자의 정의(한국)

(1) 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이와 같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2) 주소판정기준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자산의 소재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 거소의 개념과 거주기간계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4) 조세조약상 과세특례

비거주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된다.

2.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 ① 소득을 발생시킨 결정적 원인이 국내이어야 한다.
- ②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한다.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 이자소득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받는 소득
- ②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관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배당소득

내국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과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3)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채석채취에 관한 권리, 지하수개발, 이용권양도, 임대, 그 외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산업용, 화학용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근로소득

국내에서 근로의 제공대가로 받는 급여

8)퇴직소득

국내에서 근로제공에 대응하여 받는 연금과 퇴직급여

9)양도소득

①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기타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이 용권

③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50%이상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10)사용료소득

①일정한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②일정한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유가증권 양도소득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유가증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2)기타소득

기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열거된 것

(3)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장내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로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되는 이자,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않는다.

3.국내사업장

(1)국내사업장의 범위와 개념

1)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말한다.

2)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①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②상점과 기타 판매장소

③작업장, 공장 또는 판매장소

④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하여 감독하는 장소

⑤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i)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ii)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장소
⑥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과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 및 채취
장소

3)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소

- ①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②판매목적이 아닌 자산의 보존, 보관만을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③광고, 선전, 정보수집과 제공, 시장조사를 하거나 기타 사업수행상 예비적, 보조적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 ④자기자산을 타인에게 가공만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국내에서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 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4.과세방법

(1)기본구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2)비거주자의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퇴직, 양도소득은 제외)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한편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 근로,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리과세 한다.

1)종합과세

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 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과 신고, 납부(중간예납 포함) 및 결정, 징수에 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를 준용한다. 단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및 다 자녀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2)분리과세(원천징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 근로, 퇴직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

구분	원천징수세액
(1)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금액×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지급금액×14%
(2)사업소득,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지급금액×2%
(3)인적용역소득	· 지급금액×20%
(4)근로소득	· 거주자의 경우를 준용
(5)양도소득(예납적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N [지급금액×10%、(지급금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20%]
(6)유가증권양도소득(*주 2)	

3)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분리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등의 특례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같은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동일 사업년도에 2회 이상 양도함에 따라 조세조약에 정해진 과세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이와 같이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5)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및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Tax Haven)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5.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방법

(1) 양도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2)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

① 토지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자산(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비상장 주식 등에 한한다)

3) 국내사업장의 귀속유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귀속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4) 원천징수시기 및 세율

① 원천징수시기: 최종잔금을 청산할 때에 일괄하여 원천징수 한다.

② 원천징수세율

i) 원칙: 양도대가 즉 지급금액의 10%

ii) 예외: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5) 원천징수의무 면제

① 양도자가 양도시기 도래 전에 예정신고를 하거나 납부한 경우

②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대상인 경우

6)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환급

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비과세확인서 발급업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바로 신고 납부하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에 해당될 때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다.

8)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퇴직소득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제공에 대응하여 받는 연금과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II 세리사법인(일본)

1. 세리사법인제도의 의의

근년 기업을 에워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세리사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리사법인제도가 2002년도 신설되었습니다.

세리사법인은 그 사명으로서 세리사와 같이 세리사법 제 1 조에서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고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리사법인의 인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사원은 세리사에 한정될 것
- ②사원의 수는 2인 이상일 것
- ③사원 중에는 세리사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일 것

세리사법인의 업무는 세리사법 제 2조 제 1 항에 규정된 업무입니다. 또한 세리사업무 이외에도 세리사업무에 부수되는 회계업무나 세리사업무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회계업무 보좌인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거나 다른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세리사법인의 설립

세리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먼저 세리사법인의 목적은 세리사법에서 정해진 업무범위 내에서 자유로 정할 수 있으나 세리사업무는 필수적이며 세리사업무에 부수되는 회계업무, 세리사업무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회계업무 및 보좌인업무에 한정됩니다.

또한 세리사법인의 명칭은 세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명칭 중에는 「세리사법인」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리사법인의 설립은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서 세리사법인이 성립 됩니다.

그리고 성립일부터 2 주일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복사분을 첨부 하여 그 뜻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 세리사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세리사법인의 사원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이어야 합니다. 또한 세리사법인에 새로이 사원이 가입하는 때에는 사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자기 혹은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4.세리사법인의 업무

세리사법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디다만 ①의 세리사업무는 그 설립 목적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또한 ②~④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①세리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리사업무(세무대리, 세무서류 작성, 세무상담)
- ②세리사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한 세리사업무에 부수되어 행하는 재무서류 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관련업무
- ③세리사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 규정한 세리사업무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관련업무
- ④세리사법 제 2 조의 2 제 1 항에 규정한 보좌인사무의 수탁업무

그리고 개인인 세무사가 행하는 부동산관리업, 손해보험 등의 대리점, 회계사무 관련용품·컴퓨터 등의 물품판매업 등의 주변업무는 세리사법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집행권에 대하여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모든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

지며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표권한으로서 타 사원의 업무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세리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원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합니다만 사원전원의 동의(정관 또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사원의 호선)로 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의 세리사회의 회원인 사원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상주대상은 주된 사무소 이외에 종된 사무소를 포함합니다. 사원인 세리사가 상주하여야 하며 보조세리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상주」란 사무소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하는 사원세리사는 1 사무소당 1 명으로 족합니다.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복수사무소 설치하는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그 사무소도 주된 사무소 구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리사법인은 소속세리사회 구역 이외에 종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종된 사무소의 주소지에서 사무소 설치등기를 한때에 종된 사무소 소재지 구역의 세리사회 회원이 됩니다. 게다가 세리사법인은 복수지역의 세리사회 회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세리사는 상주의무의 관점에서 복수지역의 세리사회 회원은 될 수 없습니다.

5. 세리사법인의 해산

세리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관에 정해진 이유

존속기간만료, 특정사원의 사망 등입니다.

② 사원전원의 동의

사원전원의 동의로서 해산이 가능합니다.

③ 타 세리사법인과의 합병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 경우의 피흡수법인, 신설합병 경우의 합병당사자인 법인은 당연히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소멸됩니다.

④ 파산절차 개시결정

세리사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연히 해산되며 청산절차 없이 소멸됩니다.

⑤ 재판상 해산명령

세리사법인은 해산명령 또는 해산제소에 따라 해산합니다. 해산명령은 세리사법인이 기대되는 사회적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하게 된 때에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인 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해산제소는 세리사법인이 자치적 능력을 상실한 때에 사원의 제소로서 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을 명하는 것입니다.

⑥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세리사법인이 설립요건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재무부장관은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외에 사원이 1 명이 되어 그 한 명이 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6 월간 사원이 2 명 이상 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6 월이 지난때에 해산됩니다.

6. 세리사법인의 징계·벌칙

세리사법인의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리사법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재무부장관은 세리사법인이 세리사법 혹은 세리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계고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세리사법인을 처분할 때 그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에게 세리사법 제 45 조 (탈세상당 등을 한 경우의 징계), 제 46 조(일반징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원 등인 세리사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세리사법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의 사원 등의 영향

소속한 사원 등은 자기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한 개인적으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아니하나 세리사법인이 해산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 또는 사용자인 세리사라는 입장을 상실하게 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정지기간 중은 당해 세리사법인으로서의 세리사업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④ 사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사원세리사 등이 징계처분에 회부된 경우 세리사법인 자체가 징계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세리사법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7.세리사법인의 수입

일본세리사연합회가 2004년 4월에 전국의 세리사회원 및 세리사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5 회 세리사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세리사법인의 수입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Ⅲ. 성실신고확인제도

1. 도입배경

성실신고확인제의 본래 명칭인 ‘세무검증제’는 본래 청와대에서 세무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 방안’으로 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기장을 하지 않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도록 하는 일명 ‘교차세무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납세자가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신고내용에 대해 세무사에게 검증 받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세무조사 등)에 의한 불편과 불안을 배제하고자 하였던 우리회의 ‘신고검증제’와는 그 태생을 달리한다.

당초 정부가 세무검증제로 입안하였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단체의 반대 등 많은 진통을 겪으며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으나, 현재 별도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과 세무조사 인력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세무검증 직무수행 중에 고의·과실이 있는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2. 주요내용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시행령 규정)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수입금액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제 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0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원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억 5천만원

이와 같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나 외부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을 따질 때와 같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해당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 신규개업자나 폐업자 등 연환산 규정은 없으며 업종 겸영 시 주업종환산 기준은 있음.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과 동일, 소득세법 133조 2항 참조)

(2)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 20조 2에 따라 등록된 공인 회계사를 포함한다.),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이다. 그러므로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는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자기가 스스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고 다른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성실신고 확인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확인자가 엄격하고 성실하게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임의로 수입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확인자의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지 위함이다.

(3)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자에게 확인업무를 맡기면서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연 100 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2012.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 52조제 2항 및 제 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 52조제 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4)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통제제도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결손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주식 등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

정부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한 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선정에 의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성실신고확인을 허위로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에 정부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명서류가 없는 비용의 계상 등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자가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매출누락이나 허

위증빙에 의한 경비계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5) 성실신고확인사항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 기본사항 확인

①사업장 현황 : 종업원 수, 건물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수 등

②사업내역 현황 : 주요매출·매입처,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

2)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지출비용(손익계산서 항목, 원가명세서 항목)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및 미수취 사유,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격증빙보다 과다 비용 계상한 항목을 확인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업무무관 경비 여부 확인

① 인건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여부,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및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가공 인건비 여부 등 확인

② 차량유지비 : 업무용 차량 보유 현황, 용도 등을 검토하여 가정용 차량 유지·관리비 등 업무무관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② 통신비 : 가족·친척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및 해외통신비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④ 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지출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⑤ 접대비, 여비·교통비 : 지출내용, 목적, 장소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⑥ 이자비용 : 차입금 현황, 차입처, 차입금 용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이자의 존재 여부 확인

⑦ 감가상각비 : 사업내용, 유형자산의 취득목적 및 실물 등을 검토하여 업무무관자산,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확인

⑧ 건물관리비 : 사업용·비사업용 건물 소유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4) 수입금액 관련 : 매출누락 여부 확인

① 공통사항

- 총수입금액 내역 검토, 매출증빙발행 현황,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신고 현황 및 지급내역서 제출 현황 분석, 부가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비교
- 사업현황(종업원수, 사업용자산)과 인건비, 원재료비와의 관계비교분석
-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부외경비 존재 여부,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누락 여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 서명

② 업종별

- 업종별 특성에 맞게 비보험 항목(의료업), 성공보수(전문자격사), 종업원봉사료, 친인척·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현금수입업종) 등 탈세가 빈번한 항목의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 납세자의 확인서를 징구

3.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신고 이전에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 납세의무 이행의 성실성을 사전검증하도록 하여 성실기장과 신고를 검증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신고납세방식에서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납세자의 장부와 증거자료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성실신고확인자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이 필수적이며 제도적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

‘성실신고확인제’가 과표양성화와 성실납세풍토조성이라는 본래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영리활동 직무에 머물러 있던 세무사가 공공성이 있는 준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미비하여 앞으로 입법 및 관련규정을 통한 개선과 제도운용이 필요하다.